공 개

의안번호	제 27 호
보 고 연 월 일	2021. 4. 21. (제 8 차)

보고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4. 21.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를 개정('21. 4. 1.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그간의 경과)** 회계기준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차료 할인 관련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20.7월)

> **< K-IFRS 1116 '리스' 개정안**(1차 개정, '20.7월) **주요내용 >**
>
> □ **(기존) 리스이용자**(임차인)는 향후 지급할 임차료를 리스부채로 인식하는데, 임차료의 면제·할인 등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 □ **(개정)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차료 할인** 등을 받을 경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실무적 간편법)할 수 있도록 허용*
>
> * 개정전에는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부담과 리스변경에 해당할 경우 **리스부채를 재측정** 하는 등의 회계처리 부담이 있었음
>
> ○ 다만, **실무적 간편법**을 위해서는 ❶**변경 후 리스료**가 **변경 전 리스료 이하**이며, ❷**'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❸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아야 함**

□ **(개정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1.3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리스이용자의 실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IFRS 16 '리스'**를 **개정·공표**('21.3.31.)함에 따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21.4.1.)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 **(실무적 간편법 적용기간 연장)** 코로나 19 관련 실무적 간편법 적용 기간을 **1년 연장** (→ 아래 표의 조건 ❷ 개정)

< K-IFRS 1116 '리스' 2차 개정안 주요내용 >

□ 리스이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관련 리스료 감면 등을 **리스변경인지 평가**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반영 가능

❶ **변경 후 리스료**가 **변경 전 리스료 이하**
❷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
❸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다. 시행일

□ **(시행일)** **'21. 4. 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21. 3. 31. 현재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음

□ **(경과규정)** 실무적 간편법(2020년 7월 개정)을 이미 선택한 기업은 금번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되면 해당 계약에도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

* 최초 적용 누적효과: 개정안 최초 적용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 조정**

○ '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으나, '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21년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선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리스이용자의 **실무적 간편법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임차료 할인을 받은 일부 기업(예: 공항 면세점 영위 기업 등)들의 **현행 회계처리 실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참고) '20년 개정과 '21년 개정 회계처리 예시

□ **(사례 1)** X사는 리스계약A(기간: 2020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한 건만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을 선택할 수 없었음[*]

* 3가지 요건 중 요건❷(리스료 감면이 '21.6.30. 이전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 미충족

○ 그러나, **'21년의 개정**으로 해당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리스 계약	코로나19 임차료 할인 기간	2020년 개정		2021년 개정	
		충족 여부	실무적 간편법	충족여부 (개정조건)	실무적 간편법
A	'20.7.1. - '22.6.30.	미충족	**선택 불가** (리스변경 회계처리)	**충족**	**선택 가능**

□ **(사례 2)** Y사는 특성이 비슷한 리스계약(기간: '20.1.1. ~.24.12.31.) 3건(B, C, D)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년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음

○ '21년 개정에 따르면, 계약 C에 추가된 2차 임차료 할인과 계약 D의 임차료 할인에도 K-IFRS 제1116호 문단 2[**]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리스 계약	코로나19 임차료 할인 기간	2020년 개정		2021년 개정	
		충족 여부	실무적 간편법	충족여부 (개정조건)	실무적 간편법
B	'20.7.1. - '21.6.30.	충족	선택	충족	적용
C[*]	**(1차)** '20.7.1. - '21.6.30.	충족	선택	충족	적용
	(2차) '21.7.1. - '22.6.30.	N/A		**충족**	**적용(의무)**
D	'20.7.1. - '22.6.30.	미충족	**선택 불가** (리스변경 회계처리)	**충족**	**적용(의무)**

* **1차 임차료 할인**은 **'20.7.1.**에, 2차 임차료 할인은 **'21.7.1.**에 제공됨

** (문단 2)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계약 조건과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21. 3. 12.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1. 3. 12. ~ 2021. 3. 25.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1. 4. 1.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고(2021.4.13.)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4. 1.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 12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 15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1C와 C20BA~ C20B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리스이용자

측정

후속측정

리스변경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2) 리스료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3)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C1C 2021년 [ ]월에 공표한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따라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20BA~C20BC를 추가하였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 내용을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1년 3월 31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BA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B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C20BC 이 기준서 문단 2를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A 참조)이나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 중 어느 것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1. 4. 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205D를 개정하였고, 문단 BC205H~BC205J와 이와 관련되는 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측정 : 리스이용자(문단 23-46B)

리스변경(문단 44~46B)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BC205D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리스료 총액을 증가시키는 임차료 할인 등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2) 당초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 예정인 리스료만 감소한다.[1] IASB는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관련 리스료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할인 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대로 리스료의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후까지 연장된다면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IASB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주시했다. 만약 실무적 간편법이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한 미래의 많은 변동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당초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예정인 리스료에 대한 감면인 임차료 할인 등에만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하면 리스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리스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이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또한 문단 46B(2)의 조건은 적용하기 쉬울 것이고,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3) 질적요인과 양적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변경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 이외에 다른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리스변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ASB는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 3개월 분 임차료를 면제하는 대신 리스 종료시점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3개월 분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BC205H 2021년 3월에 IASB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1년 개정)을 발표하여 IFRS 16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리스료 감면이 원래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2021년 3월에 IASB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발표하여 IFRS 16 문단 46B(b)에서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개정하였다(문단 BC205H~BC205J 참조).

BC205I IASB는 2021년 개정 당시에 부여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IASB는 특히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기간에 직면한 다른 많은 어려움을 고려하면 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 등의 회계처리에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1년 개정에 대해 의견을 준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거의 모든 재무제표 이용자를 포함)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 연장을 지지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5월에 IASB가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하였을 당시, 이 감염증의 지속적인 심각성이 예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이 가장 필요할 때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더는 처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모든 측면에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연장하는 것이 2020년 5월에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할 당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05B 참조).

BC205J IASB는 문단 46B(b)의 조건 가운데 날짜만 개정하였다. 즉, IASB는 새로운 실무적 간편법을 도입하지도 않았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또는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선택권을 도입하지도 않았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2021년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할 때 IFRS 16 문단 2의 관련성을 IFRS 16 문단 C20BC에서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2를 적용하면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적격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의 연장된 적용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2021년 개정 내용에서도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적격한 임차료 할인 등(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만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IASB가 2021년 개정 내용을 발표할 당시, 리스이용자가 적격한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또는 적용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한 리스이용자는 여전히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리스이용자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Nick Anderson 위원과 Zachary Gast 위원의 반대

DO1 Anderson 위원과 Gast 위원은 '2021 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공표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리스이용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0년 개정)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지한 전제는 그 개정 내용이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2020년 개정을 개발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처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K-IFRS 제1116호 '리스'

본문

Amendments to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Amendments to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Paragraph 46B is amended. Paragraphs C1C and C20BA – C20BC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1C와 C20BA~C20B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Lessee	**리스이용자**
... **Measurement** ... **Subsequent measurement** ... ... *Lease modifications*	... **측정** ... **후속 측정** ... ... *리스변경*
46B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applies only to rent concessions occurring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only if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change in lease payments results in revised consideration for the lease that is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Amendments to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substantially the same as, or less than, the consideration for the lease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 (b) any reduction in lease payments affects only payments originally due on or before 30 June 2022~~2021~~ (for example, a rent concession would meet this condition if it results in reduced lease payments on or before 30 June 2022~~2021~~ and increased lease payments that extend beyond 30 June 2022~~2021~~); and (c) there is no substantive change to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ase. ...	(2) 리스료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3)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Appendix C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Effective date**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	...

Amendments to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C1C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issued in March 2021, amended paragraph 46B and added paragraphs C20BA – C20BC. A lessee shall apply that amendment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April 2021.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ncluding in financial statements not authorised for issue at 31 March 2021. …	C1C	2021년 X월에 공표한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따라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20BA~C20BC를 추가하였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 내용을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1년 3월 31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
Transition …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for lessees** …		**경과규정** …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	
C20BA	A lessee shall apply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see paragraph C1C) retrospectively, recognising the cumulative effect of initially applying that amendment as an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lessee first applies the amendment.	C20BA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B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 lessee first applies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a lessee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28(f) of IAS 8.	C20BB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C20BC	Applying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a lessee shall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consistently to eligible contra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in similar circumstance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tract became eligible for the practical expedient as a result of the lessee applying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see paragraph C1A) or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see paragraph C1C).	C20BC	이 기준서 문단 2를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A 참조)이나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 중 어느 것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결론도출근거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결론도출근거**
Paragraph BC205D is amended. Paragraphs BC205H – BC205J and their related heading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BC205D를 개정하였고, 문단 BC205H~BC205J와 이와 관련되는 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Measurement: lessee (paragraphs 23-46B)	**측정: 리스이용자(문단23~46B)**
…	…
Lease modifications (paragraphs ~~44-46B~~)	**리스변경(문단 ~~44~46B~~)**
…	…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	…
BC205D The Board considered the risk of the practical expedient being applied too broadly, which could result in unintended consequences. The Board therefore limited the scope of the practical expedient so that it applies only to rent concessions that occur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BC205D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a) result in revised consideration for the lease t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or less than, the consideration for the lease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 The Board was of the view that a rent concession that increases total payments for the lease should not be considered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except to the extent the increase reflects only the time value of money.	(1)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리스료 총액을 증가시키는 임차료 할인 등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b) reduce only lease payments originally due on or before 30 June 2022~~2021~~.[1] The Board noted that a related increase in lease payments that extends beyond 30 June 2022~~2021~~ would not prevent a rent concession from meeting this condition. In contrast, if reductions in lease payments extend	(2) 당초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 예정인 리스료만 감소한다.[1] IASB는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관련 리스료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할인 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대로 리스료의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후까지 연장된다면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조건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beyond 30 June 20222021, the rent concession in its entirety would not be within the scope of the practical expedient. In developing this condition, the Board observe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could continue for some time. If the practical expedient were not limited to a particular time frame, a lessee could conclude that many future changes in lease payments would be a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Limiting the practical expedient to rent concessions that reduce only lease payments originally due on or before 30 June 20222021 provides relief to lessees when they are expected to need it most, while being responsive to concerns from users of	을 마련하면서 IASB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주시했다. 만약 실무적 간편법이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한 미래의 많은 변동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당초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예정인 리스료에 대한 감면인 임차료 할인 등에만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하면 리스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리스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이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또한 문단 46B(2)의 조건은 적용하기 쉬울 것이고,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financial statements about comparability if lessees were to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beyond when it is needed. The Board also expected the condition in paragraph 46B(b) to be easy to apply, and to help lessees in identifying rent concessions occurring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c) introduce no substantive change to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ase, consider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actors. Consequently, if a modification to a lease incorporates other substantive changes—beyond a rent concession occurring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the modification in its entirety does not qualify for the practical	(3) 질적요인과 양적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변경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 이외에 다른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리스변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ASB는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 3개월 분 임차료를 면제하는 대신 리스종료시점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3개월 분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경우는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expedient. The Board noted that, for example, a three-month rent holiday before 30 June 20222021 followed by three additional months of substantially equivalent payments at the end of the lease would not constitute a substantive change to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ase.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1] In March 2021 the Board issued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which amended the date in paragraph 46B(b) of IFRS 16 from 30 June 2021 to 30 June 2022 (see paragraphs BC205H–BC205J).	[1] 2021년 3월에 IASB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발표하여 IFRS 16 문단 46B(b)에서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개정하였다(문단 BC205H~BC205J 참조).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BC205H In March 2021 the Board issued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the 2021 amendment), which extended the availability of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of IFRS 16 by one year. The 2021 amendment resulted in	BC205H 2021년 3월에 IASB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1년 개정)을 발표하여 IFRS 16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리스료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the practical expedient applying to rent concessions for which any reduction in lease payments affects only payments originally due on or before 30 June 2022, provided the other conditions for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are met.	감면이 원래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BC205I The Board extended the availability of the practical expedient in response to stakeholder feedback about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ing granted at the time of the 2021 amendment. The Board was informed that lessees continue to face challenges accounting for rent concessions,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many other challenges lessees face during the pandemic. Almost all stakeholders—including almost all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that provided feedback on the 2021 amendment supported extending the availability of the practical expedien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greed that the ongoing severity of the pandemic had not been envisaged when the Board originally developed the	BC205I IASB는 2021년 개정 당시에 부여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IASB는 특히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기간에 직면한 다른 많은 어려움을 고려하면 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 등의 회계처리에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1년 개정에 대해 의견을 준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거의 모든 재무제표 이용자를 포함)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 연장을 지지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5월에 IASB가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하였을 당시, 이 감염증의 지속적인 심각성이 예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이 가장 필요할 때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practical expedient in May 2020; they nonetheless highlighted the continued importance of limiting the availability of the practical expedient so that it can be used only when it is needed most. The Board acknowledged that lessees were no longer applying IFRS 16 for the first time, but concluded that, in all other respects, extending the scope of the practical expedien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Board's objectives when it originally developed the practical expedient in May 2020 (see paragraph BC205B).		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더는 처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모든 측면에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연장하는 것이 2020년 5월에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할 당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05B 참조).
BC205J	The Board amended only the date within the condition in paragraph 46B(b)－it introduced neither a new practical expedient nor a new option to apply (or not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In response to stakeholder feedback, the Board decided to highlight－in paragraph C20BC of IFRS 16－the relevance of paragraph 2 of IFRS 16 when first applying the 2021 amendment. Applying paragraph 2, a lessee that had already applied the practical	BC205J	IASB는 문단 46B(b)의 조건 가운데 날짜만 개정하였다. 즉, IASB는 새로운 실무적 간편법을 도입하지도 않았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또는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선택권을 도입하지도 않았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2021년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할 때 IFRS 16 문단 2의 관련성을 IFRS 16 문단 C20BC에서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2를 적용하면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적격한 계약에 실무적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expedient in paragraph 46A w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extended scope of the practical expedient to eligible contra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in similar circumstances. Similarly, the 2021 amendment did not allow a lessee to elect to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if the lessee did not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to eligible rent concession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in similar circumstances, including those that reduce only lease payments due on or before 30 June 2021. At the time the Board issued the 2021 amendment, a lessee may not have established an accounting policy on applying (or not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to eligible rent concessions. Such a lessee could still decide to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however that lessee would be required to do so retrospectively and to apply it consistently to contra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in similar circumstances.	간편법의 연장된 적용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2021년 개정 내용에서도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적격한 임차료 할인 등(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만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IASB가 2021년 개정 내용을 발표할 당시, 리스이용자가 적격한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또는 적용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한 리스이용자는 여전히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리스이용자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

IFRS 16 소수의견	소수의견 개정안
Dissent of Nick Anderson and Zachary Gast from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Nick Anderson 위원과 Zachary Gast 위원의 반대**
DO1 Messrs Anderson and Gast voted against the publication of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They are concerned that an extension to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actical expedient is available will further impede comparability between lessees that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and those that do not. They note that support fro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the 2020 amendment) was predicated on limiting the practical expedient to a specific time frame that the amendment will extend by 12 months. They also note that one key reason the Board developed the 2020 amendment was because, at that time, lessees were applying IFRS 16 for the first time and that this is no longer the case.	DO1 Anderson 위원과 Gast 위원은 '2021 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공표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리스이용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0년 개정)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지한 전제는 그 개정 내용이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2020년 개정을 개발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처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